##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9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양금희·김영식·김정재

이 영·강대식·윤두현

최승재 • 이종성 • 윤주경

전주혜 · 황보승희 · 한무경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은밀화,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수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은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실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은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획득할
	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

- ③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 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실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